

사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제66호
----------	-------------

제출연월일: 2006. 10. 16 .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과 사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재정으로 나타난 운영상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집행 범위를 정한 조항 삭제

⇒ 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2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조항 삭제(조례 제4조제3항)

나. 기금의 지급 범위 조정

⇒ 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 신설(제9조)

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 조항 삭제

⇒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 지원(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라.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요건을 하향 조정(조례 제14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제109회 - 총무위 부록)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06. 9. 20.~10.1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천시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를 “교육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으로”로 한다.

제8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고등학생”을 “중학생”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중 “대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학생 : 장학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하고, “40인”을 “30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생략). ③기금의 집행은 목표액 조성시까지 매년 2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5조(기금의 용도) ①(생략) 1~2.(생략) 3. 기타 우수학생 및 <u>고등학교</u> 육성과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천시 인재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 <u>교육지원과</u> 관련되는 사업으로-----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 지급대상) (생략) 1~5.(생략) 6. <u>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관내 고등학교</u>	제8조(기금 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삭제>
제9조(기금의 지급 범위) ①(생략). 1. <u>고등학생</u> : 장학금 2. <u>대학생</u> : 장학금 3. <신설> 4. <u>고등학교</u> : <u>교육환경개선지원금</u> 5. 기타 : <u>상사업비 또는 장학금</u>	제9조(기금의 지급 범위) ①(현행과 같음) 1. <u>중학생</u> : ----- 2. <u>고등학생</u> : ----- 3. <u>대학생</u> : 장학금 4. <삭제> 5. <삭제>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 (생략) ② <u>관내 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환 경 개선지원금은 매 학년 상반기중에 지급결정을 한다.</u>	제10조(기금의 지급시기)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11조(기금 지급정지) ①(생략) ② <u>교육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받은 학 교에서는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되도 록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목적외 사 용시에는 전액 회수 조치한다.</u>	제11조(기금 지급정지) ①(현행과 같음) ② <삭제>

현 행	개 정(안)
<p>제12조(지원금 지급 등) ①매년 관내 고 등학생중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개 선지원금을 지급한다.</p> <p>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기금과는 별도로 사 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하여 학교 발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 인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 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생략)</p> <p>제16조(기능)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략)2. <u>교육환경개선지원 대상학교 선정기 준 설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 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심의</u>3. <u>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방향 기 획·조정</u>4. <u>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 심의</u>5. (생략)	<p>제12조 <삭제></p> <p>제14조(구성) ①----- ---부위원장 1인-----30인----- ----- ②-----부시장-----,부위원장은 ----- ----- ③(현행과 같음)</p> <p>제16조(기능)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삭제>3. <삭제>4. <삭제>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